

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222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04. 07.
제출자 권민찬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3년 4월 7일 권민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개정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 위치 변경 및 현 조례안 내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 변경(안 제1조·제2조)
- 인용조문 변경(안 제3조·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안 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